

Safety Data Sheet

MSDS-KR-25011-R05

개정일자 : 06/17/2025

Power cDNA Synthesis Kit

최초 제정일자 : 05/02/2001

직전 개정일자 : 06/03/2013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- 제품명 : Power cDNA Synthesis Kit – RNase inhibitor (10U/μl)
- 제품번호 : 25011
- 용도 : 실험실용 시약
- 회사명 : (주)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
- 주소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(상대원동, 중앙인더스피아 5 차 701 호, 702 호, 904 호, 905 호)
- 전화번호 : 031-739-5678
- 비상전화번호 : 031-739-5678

2. 유해성 및 위험성

- GHS 분류 : - 해당 없음
- 그림문자 : - 해당 없음
- 신호어 : - 해당 없음
- 유해성 문구 (H 문구) : - 해당 없음
- 주의 문구 (P 문구) :
 - P264+P302+P352: 피부에 묻으면 비누와 물로 세척
 - P280: 보호장갑/보호의/보안경 착용
 - P305+P351+P338: 눈에 묻으면 물로 수 분간 세척

3. 구성성분 및 함유량

- RNase inhibitor (10U/μl)

화학명	CAS No.	함량(%)
글리세롤 (Glycerol)	56-81-5	< 50
염화칼륨 (Potassium chloride, KCl)	7447-40-7	< 3
HEPES (4-(2-Hydroxyethyl)-1-Piperazineeth)	7365-45-9	< 1
Dithiothreitol (DTT; 1,4-Dimercapto-2,3-butanediol; 1,4-Dimercapto-2,3-butanedio)	3483-12-3	< 0.1

Safety Data Sheet

MSDS-KR-25011-R05

개정일자 : 06/17/2025

Power cDNA Synthesis Kit

최초 제정일자 : 05/02/2001

직전 개정일자 : 06/03/2013

4. 응급조치 요령

- 흡입 : 신선한 공기로 이동, 증상 지속 시 의사 진료
- 피부 접촉 : 물과 비누로 세척, 증상 지속 시 의사 진료
- 눈 접촉 : 수 분간 물로 세척, 필요 시 의사 진료
- 섭취 : 즉시 세척, 의료처치

5. 폭발·화재 시 대처방법

이산화탄소, 분말 또는 폼 소화기 사용. 보호장비 착용.

6.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

보호구 착용, 환기, 물로 충분히 세척 및 흡수제로 흡수하여 폐기.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냉동 또는 냉장 보관, 냉해동 반복 금지, 직사광선 및 고온 환경 차단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보호안경, 보호장갑, 적절한 환기 필요.

9. 물리적·화학적 특성

무색 혹은 연노랑 액체, 무취, pH 7.0~9.0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안정함.

- 회피 조건: 고온, 반복적인 냉해동
- 분해 생성물 없음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구성물질은 대부분 비독성 또는 저농도로 위해성 거의 없음.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구성물질은 환경에 대한 유해성 없음으로 간주되나, 대량 폐기는 피할 것

Safety Data Sheet

MSDS-KR-25011-R05

개정일자 : 06/17/2025

Power cDNA Synthesis Kit

최초 제정일자 : 05/02/2001

직전 개정일자 : 06/03/2013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- 제품 또는 오염된 용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로 분리 수거하여야 함
- 대량 폐기 시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- 해당 없음 (비위험물)
- 냉동 운송 권장

15. 법적 규제사항

- 산업안전보건법: 해당 없음
- 화학물질관리법: 해당 없음
- 위험물안전관리법: 해당 없음
-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취급 및 관리 필요

16. 기타 참고사항

본 자료는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,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
작성일자: 2025-06-17

작성자: (주)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

본 문서는 법적 책임을 대체하지 않으며, 사용자는 관련 법령 및 사용 조건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함.